

공시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 넵튠

제정 2016.12.28

개정 2017.06.0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넵튠(이하 '당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 88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 88 조 제 2 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 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59 조, 제 160 조, 제 165 조, 영 제 168 조, 제 170 조, 발행공시규정 제 4-3 조, 공시규정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 7 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 및 제 16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 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 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 9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1 조 내지 제 123 조, 제 130 조, 제 161 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2 조, 제 137 조, 제 171 조, 발행공시규정 제 2-4 조, 제 2-6 조, 제 2-14 조, 제 2-17 조, 제 4-5 조, 제 5-8 조 내지 제 5-10 조, 제 5-15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⑬의2.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 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③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017.06.02 개정)

④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사업부서로부터의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017.06.02 개정)

제 5 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고,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17.06.02 개정)

②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3.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4.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5.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6.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검토·승인
7.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8.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사업부서로부터의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017.06.02 개정)

제 6 조(공시담당부서)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공시담당자로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017.06.02 개정)

②공시담당자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7.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의1(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7.06.02 개정)

제7조의2(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06.02 개정)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 절 정기공시

제 8 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 사항은 별표 1 의 정기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 또는 공시담당부서 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고,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보고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시공시

제 14 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 사항은 별표 2 의 수시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5 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1 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제 1 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전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13 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 3 절 공정공시

제 19 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 사항은 별표 3 의 공정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0 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 15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유의사항) ①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2 조(준용) 제 13 조, 제 15 조 내지 제 17 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 절 조회공시

제 23 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공시 사항은 별표 4 의 조회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4 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 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 17 조 제 1 항 중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 1 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 5 절 자율공시

제 26 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 사항은 별표 5 의 자율공시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7 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준용) 제 13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3 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 16 조 제 1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 2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 3 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 16 조 및 제 17 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9 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는 별표 6 의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0 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31 조(준용) ①제 9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2 항 내지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0 조 제 3 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 10 조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9 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 15 조 내지 제 18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 4 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 32 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①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3 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 34 조(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 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게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지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 35 조(사업부서) ①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에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 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주간·월간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모니터링

제 1 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 37 조(일상적 모니터링) ①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 38 조(주체 및 시기)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 39 조(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각 현업부서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각 현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 40 조(방법 및 고려사항) ①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족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 가능하였는지 여부

③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41 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 7 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 42 조(일반원칙 및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법 제 17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 17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임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① 임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 익일까지 공시담당부서장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 이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5 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 42 조 내지 제 44 조를 준용한다.

제 46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①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 1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제 3 조 제 13 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2. 영 제 194 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증권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 8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1 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제 47 조(보도자료의 배포) ①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언론홍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언론홍보담당부서는 공시담당부서와 협의 후 배포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장과 언론홍보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 19 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 21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9 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 그리고 언론홍보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0 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 담당임직원
4. 언론홍보담당임직원
5. 기타 관련 사업부서 담당임직원

③공시담당부서장 또는 언론홍보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시장풍문 등

제 51 조(시장풍문) ①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2 조(정보제공 요구) ①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IR 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3 조(기업설명회) ①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54 조(교육) ①공시담당부서장은 회사의 주요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5 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6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기공시 사항

1.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 9월의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수시공시 사항

■ 당일 공시사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 영업 및 생산활동

- (1)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재무구조 변경

가. 증권

-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4)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5) 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 (6)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ㄱ)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ㄴ)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ㄷ)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7)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다음에 해당하는 때
 - (ㄱ)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할 때
 - (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c)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e)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8)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9)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나. 투자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3)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ㄱ)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다. 채권 및 채무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황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3)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손익

- (1) 천재·지변·전사·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 (3)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황(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 (4)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5)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황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마. 결산

- (1) 외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한다. 이하 이 목 (3) 및 제37조제2항제4호가목(3)에서 같다)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 (라) 외감법 제2조의2·제2조의3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 (2)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 (가)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최근 반기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이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나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4호의3까지, 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5)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때.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6) 외감법 제13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3. 기업경영활동

가. 지배구조 및 구조개편

(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3)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

(4)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을 때

(5)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 존립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마) 파산신청. 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에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하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

다. 소송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 (3)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 익일 공시사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1. 영업 및 생산활동

- ①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2. 재무구조 변경

가. 증권

-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나. 투자

-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당좌거래정지, 해산, 회생절차 등)에 해당하는 때

다. 채권 및 채무

-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손익

- (1)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감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3. 기업경영활동

가. 법인 존립

- (1)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별표 3) 공정공시 사항

1. 장래 사업 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 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으로 신이고 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별표 4) 조회공시 사항

1. 품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2. 중요한 정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

(별표 5) 자율공시 사항

1. 기술도입·이전·제휴
 2.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3.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4. 단기차입금 감소
 5. 파생상품 거래 이익 발생
 6. 채무면제 이익발생
 7. 증여·수증
 8.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변경
나.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 사실
다.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매분기별 재무제표
 9.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10.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11.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12. 1내지 11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공시의무사항 외의 주요경영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별표 6) 발행 및 주요사항보고서

1. 증권신고서
2. 투자설명서
3. 발행실적 보고서
4.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자기주식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5. 주요사항보고 또는 거래소신고의무사항
6.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7.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보고
8. 공개매수신고서
9. 의결권대리행사 권유